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및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9월 6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9월 17일

3. 제안이유

- 현행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에 읍면동장의 직종이 별정직으로 되어있고
- 증평출장소 증천.장평.도안3개지소의 업무기능도 시의 동.군의 읍면 기능과 동일하나
- 90. 12. 31증평출장소 설치시 3개지소중 증천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장평과 도안지소장은 5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증평출장소설치조례로 이에맞게 제정공포되었으나
- 지난 9. 6 증평출장소 기능보강을 위한 내무부장관의 정원승인시 증천지소장의 직종이 타지소장 또는 읍면동장과 같이 "5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조정승인 됨에따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것임.

4. 주요골자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 지소장의 직종을 동일하게조정

현 행	개 정
증천지소장 - 지방행정사무관 장평.도안지소장 - 5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	지소장 - 5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

5. 검토의견

지난 1991년 9월 6일 출장소의 기능보강에 따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
 조례제5조제2항중 증천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장평.도안지소장은
 5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각각 달리규정되어있는 직종을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통일조정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관련법규 : 별첨

地方自治團體의 地方公務員定員基準등에 관한 規則 (內務部令 第495號)

제1條(目的) 이 規則은 地方自治法 第10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地方公務員의 定員(以下 “定員”이라 한다)의 基準 其他 定員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條(定義) 이 規則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所屬機關”이라 함은 直屬機關·事務所 및 出張所를 말한다.
2. “直屬機關”이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直屬機關을 말한다.
3. “事務所”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0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所를 말한다.
4. “出張所”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出張所를 말한다.
5. “補助機關”이라 함은 行政機關의 意思 또는 判斷의 決定이나 표시를 補助함으로써 行政機關의 目的達成에 寄與하는 機關을 말한다.
6. “人口數”라 함은 前年度 住宅 및 人口센서스에 의한 人口數를 말한다.
다만, 住宅 및 人口센서스를 實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前年度 常住人口調査에 의한 人口數를 말한다.

제12조(職級別 定員) ① 地方自治團體의 職級別 定員은 合理的인 職級體系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別表5의 職級別 定員基準에 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버린다.

② 地方自治團體가 一般職 5級以上の 定員을 策定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研究職 研究官, 指導職 指導官, 消防領以上 消防公務員, 機能職 5等級以上 別定職 5級 相當 以上の 定員을 策定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3條(是正要求)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 規則에 定한 基準과 다르게 定員을 策定한 경우에 市·道知事は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內務部長官은 市·道知事에게 이의 是正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즉시 是正하고, 그 結果를 市長·郡守·區廳長은 市·道知事에게, 市·道知事は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地方公務員法 [1963 11. 1
法律 第1427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人事行政의 根本基準을 確立하여 地方自治行政의 民主的이며 能率的인 運營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公務員의 區分) ① 公務員은 이를 經歷職公務員과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區分한다.

② “經歷公務員”이라 함은 實績과 資格에 의하여 任用되고 그 身分이 보장되는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一般職公務員 : 技術·研究 또는 行政一般에 대한 業務를 담당하며 職群·職列別로 分類되는 公務員

2. 特定職公務員 : 地方消防公務員과 기타 特殊分野의 業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으로서 다른 法律이 特定職公務員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3. 技能職公務員 : 技能的인 業務를 담당하며 기 技能別로 分類되는 公務員

③ “特殊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經歷職公務員외의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政務職公務員

가. 選舉에 의하여 就任하거나 任命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의 同意를 요하는 公務員

나. 기타 다른 法令 또는 條例가 政務職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2. 別定職公務員

가. 秘書官·秘書

나. 邑長·面長·市의 洞長, 다만, 條例로 一般職公務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타 다른 法令 또는 條例가 別定職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別定職公務員·專門職公務員 및 雇傭職公務員의 任用條件·任用節次·勤務上限年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정한다.<改正 82.12.28>

第3條(適用範圍) 이 法의 規定은 第5章 報酬 및 第6章 服務의 規定을 제외하고, 이 法 기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特殊經歷職公務員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務員에 대하여는 第57條와 第58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81. 4.20]